

과로사의 업무상·외인성



김수복 <국제대학 교수·한국노동연구소 소장>

I. 과로사문제의 구조와 과제

1. 과로사의 의의

과로사라함은 구체적 병명은 아니며 확정적 개념이 성립되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당해 개별적 근로자로서 과중한 정신적·신체적 부담에 따른 피로의 축적으로 야기되는 생명유지 기능의 파괴로 인한 사망」을 말한다. 즉, 비생리적인 노동과정의 진행이 생체내에 피로의 축적을 낳아 그 결과 내분비의 이상을 일으켜 기존의 뇌출혈·지주막하출혈 등의 뇌혈관 질환, 심근경색, 심부전 등의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악화시킨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있다.

2. 과로사문제의 특징

오늘날 과로사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배경, 요인, 특징, 구체적 현상 등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논의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그 인정기준을 둘러싸고 고려하여야 할 과로사문제의 특징을 살펴본다.

① 과로사의 주된 내용을 이루는 각 질병은 종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그것이 과로사문제로서 부가되는 것은 근로의 질적변화와 생산관리·노동밀도의 강화등에 수반하여 과중노동과 “피로의 축적”으로 말미암아 신체에 질적인 영향을 주기에 이르고 있는데 기인한다. 그러나 피로의 축적이라는 것이 그 주

된 요인인한 외형적 사실로서의 유해인자의 특징이나 업무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기에는 어려운 특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종래의 직업병 인정의 구조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과로사는 개별적 근로자의 체질이나 기초질병과의 관련을 불가피적으로 가지고 있다. 직업병은 발증은 적은 많은 개별근로자의 신체적 특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재해성의 질병에 비해서 인정의 어려움이 있다.

과로사의 경우는 특히 개별근로자의 신체적 특징의 차이가 명확하며 대부분의 경우에 기초질병 내지 육체적 약체를 수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인정에 있어서 전기한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대한 논점이 된다.

③ 과로사에 있어서는 「위험=유해인자」의 존재에 관해서 사적 생활영역과 노동생활영역과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도 직업병 일반에 공통되는 문제이지만 전기①, ②의 특질 외에 과로사의 경우에는 특별히 전기한 성격이 강하며 업무재해라고 취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이 필요한가에 관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④ 끝으로 인정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전기한 각 특질에 대응하여 그 사망등이 업무상 재해라는 것의 거증은 특히 노동부 산재보험당국의 엄격한 인정기준하에서는 곤란하며 업무실태에 파고들어난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구제(인정) 절차의 장기화라는 문제도 생기게 된다. 따라서 과로사의 인정기준에 있어서는 정형적·신속한 인정을 가능케하는 기준의 설정이 불가피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I. 과로사의 인정기준과 판례의 문제점

1. 노동부예규

1) 과로사에 관한 노동부의 인정기준으로서는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관한 예규가 1981. 5. 7(노동부 예규 제28호), 1982. 8. 27(노동부 예규 제71호), 1983. 8. 27(노동부 예규 제92호), 1989. 12. 5(노동부

예규 제167호)에 나왔으며 이에 관하여 여러 가지의 논의가 있다.

2) 우리나라는 노동부예규 제167호(업무상 재해 인정기준)가 있고 일본에서는 1987. 10. 26(기발 620호)「뇌혈관질환 및 허혈성 심장질환등의 인정기준에 관하여」가 있다. 여기에서는 ① 재해주의의 원칙에서 「업무에 의한 명확한 과중부하를 발증전에 받은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재해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전기 과중부하 속에는 「일상업무에 비하여 특히 과중한 업무에 취로한 것」도 포함한다고 하여 이른바 과중부하주의로 전환한 것. ② 과중부하의 판단에 관해서 「발증직전부터 전날까지의 업무」를 제1판단 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발증전 1주간에 과중한 업무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도 과중부하가 있는 것으로 하여, 업무재해로 인정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계속적인 업무과중성(과로의 축적)도 판단대상으로 한 것 ③ 「과중성의 평가에 있어서는 업무량 뿐만 아니라 업무내용, 작업환경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하여 업무의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도 고려대상으로 하는 동시에 종합판단의 원칙을 제시한 것이 적극적 의의로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 노동부 예규 제167호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이 오늘의 문제로서 과로사의 인정에 많은 불충분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미 많이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전술한 문제관심에 따라서 이하의 두가지를 지적하여 두고자한다.

① 직업병의 업무기인성 판단, 특히 기초질병이 있는 경우의 그 판단에 관해서는 노동부의 원칙적 입장인 이른바 상당인과 관계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전기한 과중부하주의라는 것도 업무가 「상대적으로 유력원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로서 일상업무와 구분되는 과중부하의 존재를 요구한다는 의미의 것이라고 이해된다.

이경우 특정한 재해적 현상의 존재를 요구한다는 의미에서의 재해주의는 뛰어넘고 있으며 그 의의는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일상업무와는 구별되는 눈에 띄는 과중부하라는 현상의 존재를 요구한다는 의미

에서는 단순한 피로축적의 문제와는 질이 다르며 재해주의적 발상은 지속되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노동성의 기준이 과중부하의 판단 대상기간을 발증전 1주간으로 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하여 비판하고 있다. 행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수개월, 1년이라는 형태의 피로의 축적은 문제시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있다. 또 동시에 거기에서는 과중부하의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즉, 전기 구조하에서는 과중부하란 기초질병을 「그 자연경과를 넘어서 급격하게 현저히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현상을 말하며, 피로의 축적과는 본래적으로 그 질이 다르게 되고있는 것이다.

② 마찬가지로 기초질병이 있는 경우의 업무기인성 판단에 관하여 과중부하라함은 기초질병(병태)을 「그 자연경과를 넘어서 급격하게 현저히 증악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의학경험법칙상 인정되는 부하를 말한다」라든가, 「과중부하를 받고부터 병상출현까지의 시간적 경과가 의학상 타당한 것일 것」이라는 형태로 되어있어 의학적 판단에 대한 편중이 상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도 노동부의 직업병 인정에 있어서의 기본적 구조에 불과하다.

3) 노동부 예규 제167호가 가진 문제성은 재해보상(보장)이 사용자에 의한 손해전보에 기초를 둔다고 하는 입장과 불가분하게 결합되고 있는 것이다.

즉, 사용자의 책임(귀책성)을 명확하게 근거부여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존재와 의학적·객관적인 인과관계의 존재 등이 즉각 필요하다는 논거이다. 따라서 이것은 과중부하주의라는 것을 포함하여 재해보상(보장)의 사회보장화라는 질적인 면에 있어서 강한 비판을 받아야하며 또 「현대의 직업병」이라고 일컫는 과로사의 인정기준으로서 매우 불충분한 것 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4) 한편, 뇌혈관질환이나 허혈성 심질환의 업무상·외인정에 관한 판례는 노동부의 업무상 재해인정에 관한 억제적 태도에 대응하여 수다한 것이 축적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이들을 상세하게 분석, 검토할 여유가 없다.

이를 총체적으로 말하면 상대적 원인설 뿐만 아니라

과로사는 노동의 질적변화나 노무관리·생산관리의 강화로 인해 초래된 문제로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서 받아들여져야 마땅

공동원인설에서도 판례가 있듯, 상당인과 관계설과 재해주의와는 결합되고 있는 것이지만 판례에서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예컨대 업무가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일 것」이라고 하면서도 재해주의를 부정하는 것도 있고, 타방 일반론으로서는 공동원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재해주의 입장에 선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는 등 판례는 반드시 일치된 경향으로 나타내고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구체적인 노무실태에 착안하면서 각각의 법관의 개별적 판단에 비중을 두는 전개를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다만, 공동원인설에서 재해주의를 부정하는 판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확실하며 행정해석과의 괴리는 주목할만한 정도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있는 판례는 노동실태속에서 형성되는, 노동부가 말하는 과중부하를 넘어서는 축적적 피로에 주목하면서 판단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기한 경향이 충분히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판례는 제1로 축적피로라는 것에 대한 배려를 심화하고 평가대상기간을 연장하여 노동실태를 상세하게 답사하려고 하면 할수록 판단기준의 객관화를 어렵게 한다. 전기 판례는 아직 그러한 기준을 명확화하는데 성공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된다. 제2로 이러한 것은 불가피적으로 판단의 복잡화, 거중의 곤란성이나 구제절차의 장기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이들 두가지 점은 전술한 정형적·신속한 인정을 위한 기준설정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과로사문체의 요청과 명확하게 모순되게 되는 것이다. 제3으로 전기 판례의 사안은 판결의 인정에서 볼 때에 상당히 가혹한 노동실태에 관한 것이며(노동부 인정에서는 그것마저 업무외로 하고 있음이

큰 문제이지만) 이를 일반화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판례가 제시한 것에 있어서도 오늘날 문제시하고 있는 과로사의 인정에 관하여 충분한 것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Ⅲ. 과로사의 인정기준

이상의 재해보상(보장)의 법적성격, 인정기준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 과로사문제의 구조와 과제라는 점을 토대로 하여 과로사의 업무상 인정에 관해서 어떠한 기준을 세워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적 차원

과로사는 전술한 바와같이 노동의 질적변화나 노무관리·생산관리의 강화로 인해 초래된 문제이며 따라서 결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서 「현대의 직업병」이라고 하기에 걸맞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과정에서 발생한 생활장해에 대한 보장의 제도인 재해보상(보장)에 있어서는 이를 정면으로 포착하여 업무상 재해인정을 향해서 적극적 대응을 하는 것이야말로 기본적 자세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의 확인이야말로 여기에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2. 개별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그런데 과로사의 업무상 인정에 있어서의 최대의 눈점은 개별근로자의 신체적 특징의 차이나 기초질병등의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들로서는 현실의 살아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근로자는 바로 육체적 강약이나 기초질병을 가진 것으로서 존재하고, 그러한 것으로서 근로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리고 전술한 재해보상(보장)의 본질에서 본다면 그것은 전기한 바와같은 근로자가 노동과정에 들어가서 그 신체등에 대한 위험에 직면함으로써 생긴 생활장해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노동과정으로 몰아 넣는다는 것이 어떤 형태에서 얼마간이라도 그 근로자의 육체적 허약이나 기초질병에 작용하여 당

해질병의 발증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는 관계가 인정되는 한 즉, 당해 근로자의 기초질병에 대하여 유해한 인자가 당해 근로과정에 포함되고 있는 한 당해 근로자에게 발증한 사망등은 그것이 업무외의 사유로 급격하게 악화된 결과라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는 한 업무재해라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된다. 당해 기초질병의 자연적 경과로 인한 업무재해는 아니라고 하계되나 전술한 자연적 경과라는 것에는 이미 그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다는 사실이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서 업무외의 관련성을 뺀 자연적 경과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업무관련성설은 전기와 같은 업무관련성도 포함하여 업무재해라고 인정하는 입장이 라고 할 것이다.

판례(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 5433)는 「업무기인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보통 평균인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주야간이 뒤바뀌는 근무형태로 축적된 피로가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보아 과로원인이 될 수 있다면 위 망인에게 근무외에 과로원인이 될만한 다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장사는 위와같은 근무형태로부터 온 과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